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224

2023.09.11.
기획경제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8월 14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】

-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(2023.9.11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Ⅱ. 제안설명의 요지(경제정책실장 김태균)

가. 제안이유

○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○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」(제4조)에 의거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추진경과

- 2023. 5. 25 ~ 7. 17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(총 27명)

- 2023. 7. 27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개최
(추천자 27명 중 15명 선정)

○ 선정결과 : 총 15명(남 8명, 여 7명)

- 국가 및 지역 : 13개(※ 가나다순)

나이지리아	1	네팔	1	대만	1	독일	2
미국	2	스위스	1	아제르바이잔	1	영국	1
우즈베키스탄	1	중국	1	태국	1	프랑스	1
필리핀	1						

○ 향후일정(안)

- 2023.11월 말~12월 「2023 명예시민증 수여식」 개최

○ 관련근거

1) 수여대상 :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2조

-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

-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

※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

2) 수여대상자 결정 :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4조 제1항

-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,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

이상의 연서로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

3) 서울시의회 동의 :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제4조 제2항

-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

※ 다만,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가. 동의안의 개요

○ 동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」에 따라 2023년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로 선정된 15명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.

나. 서울시 명예시민 현황

○ ‘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제도’는 시정 발전[1]에 기여한 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국외에 서울시를 홍보하고 글로벌 위상제고를 위해 1958년부터 시행되어왔음.

○ 명예시민 대상자의 선정은 명예시민증 남발과 부적절한 대상자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 추천공모, 심사위원회의 심사,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선정됨.

- 명예시민증의 수여방식은 서울시에 일정기간 거주해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‘일반수여’와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‘특별수여[2]’ 방식이 있음.

---

1) 서울시의 위상 제고, 경제발전, 선진기술 도입, 생활 및 문화활동 분야 공헌 등

2) 「명예시민조례」의 단서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음.

- 현재까지 총 100개국 915명에게 명예시민증이 수여되었으며, 일반 수여 565명, 특별수여 182명, 그 외 국제대회 참석 등으로 1958년부터 1990년까지 시행된 한시적 수여가 168명임.[참고자료1]

<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방식>

①일반수여

대상: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자

추천: 공공단체의 장, 사회단체의 장, 30인 이상의 시민

선발 및 수여절차

명예시민 추천공모 ⇨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(조례 제4조 제1항) ⇨ 시의회 동의 (조례 제4조 제2항) ⇨ 명예시민증 수여식 개최

②특별수여

대상: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

수여: 선정심사위원회 생략 가능, 시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 가능

○ 그리고 이러한 명예시민에 선정되면 '서울시 명예시민증'이 수여되며 시정 참여 기회 제공과 각종 행사 초대, 시립시설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부여됨.

□ 명예시민 혜택사항
- 시정참여 :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,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등
- 행사초청 : 시 주관 축제 및 행사 초청(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, 국제회의, 공연 등)
- 무료입장 : 시립미술관, 서울식물원, 서울대공원 동물원·테마가든 등
- 시정소식 : 서울시 e뉴스레터, 시정 월간소식지 '서울사랑' 정기 발송 등

○ 아울러 서울시는 명예시민증 수여자를 대상으로 연간 2회(1월/7월) 국내 거주 여부와 개인정보 변동사항 등을 이메일과 유선으로 확인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.

다. 명예시민 선정의 적정성

○ 이번 동의안에 포함된 명예시민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는 후보자 공고 및 추천접수(2023.5.25.~7.6.)를 통해 추천된 총 27명을 종합 심사하여 시정공로가 인정되는 15명을 선정(2023. 7. 27.)하였음.

○ 그리고 선정된 15명은 서울시에 보잉기술연구소 설립을 주도해 한국 우주항공분야 발전에 공헌하거나 이태원 참사 당시 인근에 위치한 사무실을 실종자 신고 콜센터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인명구조에 적극 협조하는 등 「명예시민조례」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며,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법한 ‘명예시민 선정 절차’를 거쳤는바 그 적합성은 인정됨.

○ 다만 제도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명예시민 중 서울시정에 참여한 사람은 총 50여명에 불과하고, 그 대부분이 국제행사나 자문, 인터뷰 등 1회성 시정활동 참여에 그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보다 많은 명예시민이 지속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Ⅴ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재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Ⅵ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Ⅶ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

의 안 번 호	1224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(제4조)에 의거 명예시민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경과

○ 2023. 5. 25 ~ 7. 17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(총 27명)

○ 2023. 7. 27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개최
(추천자 27명 중 15명 선정)

나. 선정결과 : 총 15명(남 8명, 여 7명)

○ 국가 및 지역 : 13개(※ 가나다순)

나이지리아	1	네팔	1	대만	1	독일	2
미국	2	스위스	1	아제르바이잔	1	영국	1
우즈베키스탄	1	중국	1	태국	1	프랑스	1
필리핀	1						

다. 향후일정(안)

○ 2023.11월 말~12월 「2023 명예시민증 수여식」 개최

라. 관련근거

1) 수여대상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2조

-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
-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

※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

2) 수여대상자 결정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4조 제1항

-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,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

3) 서울시의회 동의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4조 제2항

-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

※ 다만,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

※ 작성자 : 국제교류과 도시외교팀 안소연 (☎ 2133-5281)